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3조중 “민법” 을 「민법」 으로 한다.

안 제6조제1항제4호중 “이사의 임면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” 을 “이사회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하고, 동조동항제5호를 제6호로 하며, 동조동항제6호및 제7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, 동조동항제8호 “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” 을 “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” 으로 하여 제10호로 하며, 동조동항제9호를 제11호로 하고, 동조동항에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

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안 제6조제2항중 “개정” 을 “변경” 으로 한다.

안 제8조제1항중 “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” 를 “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” 로 하고, “구의 당연직 선임이사가” 를 “상임이사가” 로 한다.

안 제8조제2항중 “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한다.” 를 “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.” 로 한다.

안제9조에 제4항을 아래와 같이 신설한다.

④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안 제10조 내지 제18조를 각각 제11조 내지 제19조로 하고,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

안 부칙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4호~~을~~ 삭제한다.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(수정안 대비표)

원 안	수 정 안
제3조(설립) 재단은 <u>민법</u>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.	제3조(설립) ————— 「 <u>민법</u> 」—————
제6조(정관) ①(생략)	제6조(정관) ①(원안과 같음)
1. - 3. (생략)	1. - 3. (원안과 같음)
4. 이사의 임연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	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5.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	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연에 관한 사항
6.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	6. (원안 제5호와 같음)
7. 공고에 관한 사항	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
8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	8. (원안 제6호와 같음)
9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	9. (원안 제7호와 같음)
	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	11. (원안 제9호와 같음)
② 재단은 정관을 <u>개정</u>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	②————— 변경—————
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<u>구의 당연직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</u> 한다.	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————— <u>상임이사가</u> —————

원 안	수정안
	(2) <u>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장한다.</u>
	(2)———— <u>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통괄한다.</u>
제9조(이사회) ① - ③(생략) ④ (신설) (신설)	제9조(이사회) ① - ③(원안과 같음) ④ <u>이사회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u>
제10조 내지 제18조	제10조(직원의 임면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<u>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.</u>
부 칙	제11조 내지 제19조(원안 제10조 내지 제18조와 같음)
제1조 내지 제3조(생략) (신설)	부 칙 제1조 내지 제3조(원안과 같음) 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7조제4호 <del>을</del> 삭제한다.  

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
(수정안대비표)

원안	수정안
<p>제6조(정관) ①(생략)</p> <p>1. - 3. (생략)</p> <p>4. 이사의 임연과 이사회에 관한 사항</p> <p>5. 감사 및 주운에 관한 사항</p> <p>6. 제4조 각호에 정한 사업에 관한 사항</p> <p>7. 공고에 관한 사항</p> <p>8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</p> <p>9.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</p>	<p>제6조(정관) ①(원안과 같음)</p> <p>1. - 3. (원안과 같음)</p> <p>4. 이사회에 관한 사항</p> <p>5.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연에 관한 사항</p> <p>6. (원안 제5호와 같음)</p> <p>7.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</p> <p>8. (원안 제6호와 같음)</p> <p>9. (원안 제7호와 같음)</p> <p>10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</p> <p>11. (원안 제9호와 같음)</p>
<p>② 재단은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괄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의 담당직 선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8조(임원의 직무)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,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-----상임이사가 -----</p>

원 안	수 정 안
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관掌한다.	② ----- 이사를 보좌하여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.
제9조(이사회) ① - ③(원안과 같음) ④ (신설)	제9조(이사회) ① - ③(원안과 같음) ④ 이사회는 재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(신설)	제10조(직원의 임연)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를 임명한다.
제10조 내지 제18조	제11조 내지 제19조(원안 제10조 내지 제18조와 같음)
	부 칙
제1조 내지 제3조(원안과 같음)	제1조 내지 제3조(원안과 같음)
제4조 (신설)	제4조(다른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7조제4호를 삭제한다.